

#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

## (학생 및 학과 공지용)

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 및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### 1. 신청유형 및 신청 방법

#### 가. 신청유형

##### 1) 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1]

학과(교수)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
**\*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[Type1]으로만 신청 가능함.**

##### 2)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2]
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. 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
나. 신청기간: 2023. 02. 09.(목) ~ 02. 24.(금)까지

다. 신청방법: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 참가 신청 (세부 사항 아래 내용 참조)

### 2.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

\*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 전공으로만 인정 됨. (복수전공, 부전공인정불가)

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			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			실습요건 *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.
국내현장실습(4)	일반선택	12	국내현장실습(4)	일반선택	12	
	전공선택	12	전공현장실습(1)	전공선택	3	
			전공현장실습(2)	전공선택	3	
			전공현장실습(3)	전공선택	3	
			국내현장실습(6)	일반선택	3	
국내현장실습(5)	일반선택	18	국내현장실습(5)	일반선택	18	20주 이상 (800시간이상)
	전공선택	15	전공현장실습(1)	전공선택	3	
			전공현장실습(2)	전공선택	3	
			전공현장실습(3)	전공선택	3	
			전공현장실습(4)	전공선택	3	
			국내현장실습(6)	일반선택	3	

\* 국내현장실습(4),(5)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실습 시작 전까지 반드시 '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' 와 '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' 를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.

### 3. 실습기간

- 가.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(640시간) 및 20주(800시간)의 실습이 가능
- 나. 실습시작일은 해당학기 (2023-1학기) 개강일로부터 가능

실습기간	시작일	종료일	비고
16주(640시간이상)	2023.03.02.(목)	2023.07.20(목)	· 기간 내 16주 설정 가능
20주(800시간이상)	2023.03.02.(목)	2023.08.17(목)	· 기간 내 20주 설정 가능
<b>※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6주 20주 모두 신청가능하나 20주로 신청할 경우                      ※ 2023. 03. 02(목) ~ 2023. 07. 19(수) 로만 진행 가능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[별첨1]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참조 바람</b>			

### 4. 신청자격

- 가. 5개 학기 이상 실습 가능 (\*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,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)
- 나.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수로 하여야 함

### 5. 참여 기업(기관) 자격

- 가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(출연)기관
  - 나.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
  - 다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  - 라.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- 마.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업(기관)
  - 바.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(2023최저임금기준 75%)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(기관)
- 사.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호) 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.

#### \* 참여제외 기업(기관)

- 1) 텔레마케팅,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, 경비, 건물관리, 주차관리, 목욕탕관리, 주유, 청소용역,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
- 2)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 판매업체,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
- 3) 소비.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, 인력공급업체 (용업업체 포함)
- 4)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5)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

### 6. 학과(교수) 협조 요청사항

- 가. 현장실습 기관의 발굴,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
- 나.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, 점검 및 지도평가
- 다.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 신청에 대한 실습지도 교수 승인
- 라. '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'의 경우 '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'와 '실습기관운영계획서'를 제출받아 확인 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

## 7. 유의사항

가.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(졸업예정자)의 경우 2023. 12. 30.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

나. 현장실습 (국내,해외)은 재학 중 최대 **36학점 범위** 안에서 인정하되,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**18학점을 초과**할 수 없다.

다.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**정규 오프라인수업을 이수할 수 없으며** 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 이외의 **오프라인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**처리 됨.

(※ 단,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+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해야 함 )

라.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

마. 현장실습 도중 채용(채용형태불문)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**유의**바람.

바.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 불가.

사.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 됨. (복수전공, 부전공 인정불가)

※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 하기 바랍니다.

## 1 현장실습 개요

### 1. 대상학과

단과대학	학과(부)
인문교양대학 (S-LAC)	* 한국어문학과, 중국어중국학과, 일본어일본학과, 러시아어러시아학과, 영어영문학과, 독어독문학과, 불어불문학과, 체육학과, 스포츠레저학과, 골프산업학과
경상대학	경제학과, 무역학과, 경영학과, 회계학과, 금융보험학과, 관광경영학과, 호텔관광학과
사회과학대학	국제관계학과, 사회학과,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, 문헌정보학과, 심리학과,
과학생명융합대학	수리빅데이터학부(수학전공), 수리빅데이터학부(통계빅데이터전공), 화학, 응용화학과, * 생명과학과, 생명환경학부(원예학전공), 생명환경학부(바이오산업학전공), 생명환경학부(식품환경안전학전공), 산림자원학과, 동물자원학과, 물리학과
공과대학	건축공학과, 건설시스템공학과, 환경공학과, 기계공학부(기계공학전공), 기계공학부(기계설계공학전공), 산업경영공학과, 식품공학과, 생명공학과, 화학공학과, 도시-조경학부(조경학과)
정보통신대학	전자전기공학부(전자공학전공, 전자제어공학전공), 정보통신공학부(통신공학전공, 멀티미디어공학전공,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), 컴퓨터정보공학부(컴퓨터공학전공,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)
조형예술대학	융합예술학부(현대미술전공), 융합예술학부(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), 산업디자인학과, 실내건축디자인학과, 융합예술학부(생활조형디자인학과), 시각디자인학과, 패션디자인학과,
재활과학대학	직업재활학과, 재활심리학과, 재활공학과, 재활건강증진학과
기초교육대학	창조융합학부
* 한국어문학과 : 국어국문학과, 국제한국어교육과 포함	
* 생명과학과 : 의생명과학과 포함	

### 나. 현장실습 제외기준

- 1) 학과 특성 상 (전문)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(요)적으로 실시하는 학과의 현장실습은 제외함
  - ① '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'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
    - 의사, 한의사, 약사, 치과의사, 한약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의무기록사, 영양사, 안경사 등
  - ② 유치원·초등·중등·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관련 학과 등
  - ③ 기타 수의사, 사회복지사, 미용사 등 (전문)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
- 2) 학과 특성상 계절제 현장실습을 선수로 이수하고 실습내용을 활용한 세미나, 발표 등을 통하여 차학기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실습을 이수하고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에 대한 실습은 제외함
- 3)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현장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
- 4)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
- 5)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
- 6) 기타 운영형태
  - ① 사회봉사, 현장체험/답사,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기체험 활동 등은 제외
  - ② 실습기관 또는 실습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외
  - ③ 해당 전공과의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은 제외
  - ④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은 제외

## 2. 실습기관(기업) 요건

- 가.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함  
(단, 전공선택의 경우 반드시 학생의 원소속학과와 전공분야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기관만 가능)
- 나. 학생의 보건.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
- 다.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한 기관
- 라.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
- 마. (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개정고시 제2장 제7조에 의거)  
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2023최저임금기준 75% 이상 실습 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(기관)
- 바.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개정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.

## 3. 참여제외 기업(기관)

### \* 참여제외 기업(기관)

- 1) 텔레마케팅,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, 경비, 건물관리, 주차관리, 목욕탕관리, 주유, 청소용역,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
- 2)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 판매업체,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
- 3) 소비.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, 인력공급업체 (용업업체 포함)
- 4)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5)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

## 4. 실습기관 인정기준

구분	내용
실습기관 모집(섭외) 방법	○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경우 ○ 학과(교수)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는 경우
실습기관 인정범위 분류	○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,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. 단,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(연구실, 연구소, 센터, 행정기관 등)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

## 5. 평가 및 학점인정

- 가. 평가는 실습생의 출근상황부, 주간활동보고서, 종합보고서, 현장실습기관성적표, 실습지도보고서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

평가항목	점수	평가방법
출근상황부	10	결근 1회당 2점 감점
주간활동보고서	15	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
종합보고서	15	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
현장실습기관성적표	40	실습기관의 실습생 평가
실습지도보고서	20	실습지도교수의 지도 평가
합계	100	Pass / Fai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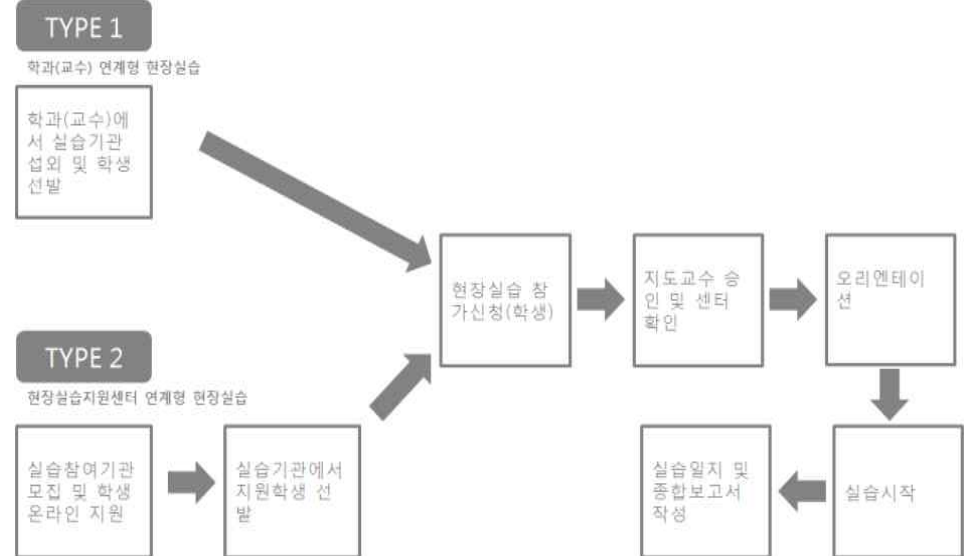
- 나. 학점인정은 실습기간 및 신청 교과목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며, '일반선택'의 교과구분으로 학점을 부여

## 2 현장실습 참가신청 안내

### 1. 신청유형 및 신청 기간

- 가. 신청유형
  - 1) 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1]  
학과(교수)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
\*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할 학생은 [Type1]으로만 신청가능함을 유의바람.
  - 2)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[Type 2]  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.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- 나. 신청기간 : 2023. 02. 08.(목) ~ 02. 24.(금) 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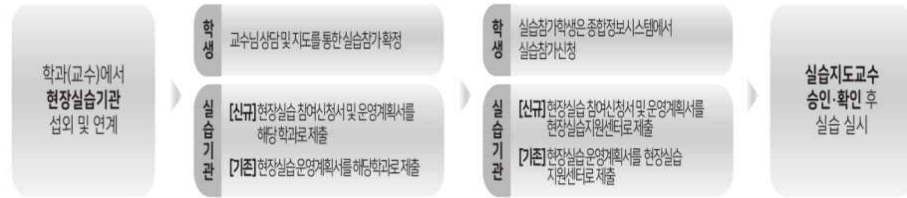
### 2. 실습유형별 참여 및 신청방법



**TYPE 1 학과(교수) 연계형 현장실습 참여 및 신청방법**

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

- 1) 학과(교수)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실습기관 섭외 및 연계
  - 2) 학과 교수님 상담 및 지도를 통한 현장실습 참가 확정
  - 3) **국내현장실습(4),(5)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(전공선택과 일반선택 혼합인정) 후 신청하여야 하며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'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조건서'와 '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'를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.**
  - 4) 실습기관, 실습기간 및 실습업무 등이 확정되면 해당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 및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
  - 5) 실습지도교수 승인 →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
- 단, 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 개정 고시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바람.



- ① 학과 교수님과 상담한 후 실습기관을 추천받고 실습참가 확정
- ②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



③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작성 후 신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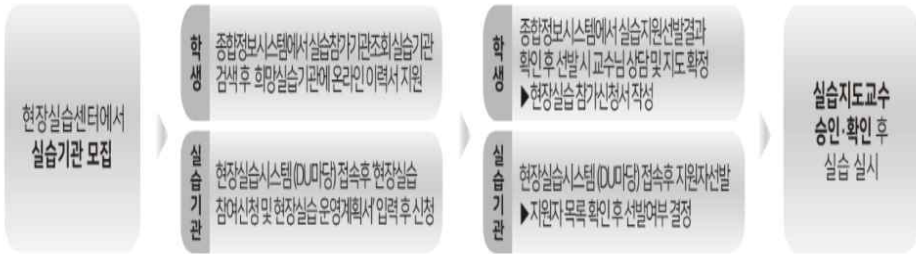
교과목명	교과목군	과목	학점	실습시간
국내현장실습(단)	일반선택	계열계	2	4주 이상(160시간 이상)
국내현장실습(중)	일반선택	계열계	4	8주 이상(320시간 이상)
국내현장실습(사)	일반선택	특기계	12	16주 이상(640시간 이상)

- 학생 개인정보사항은 학적시스템의 데이터이며 연락처, 계좌번호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 (학적, 등록/장학 등)에서 수정하여야 함
- 실습시작일과 종료일은 16주 또는 20주의 기간을 충족하여야 저장이 되며 실습기간을 입력하면 교과목, 학점 등이 자동 입력됨
- 지도교수는 실습지도교수를 말하며, 현장실습을 지도하실 교수님을 '찾기' 메뉴를 통해 선택하고 해당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 (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한 교수님의 승인이 어려우면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재지정 하여야 함)
- 위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'신청' 버튼 클릭

**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참여 및 신청방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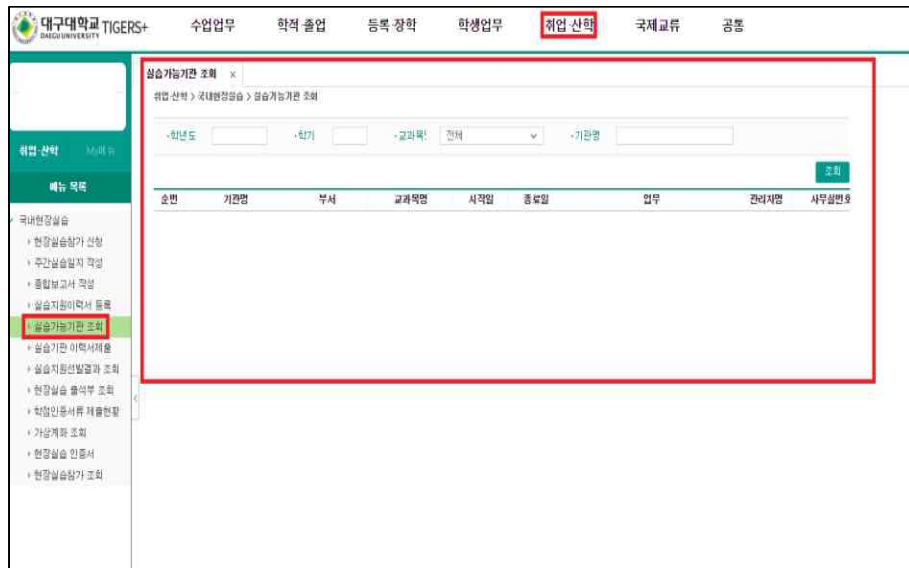
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.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

- 1)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
- 2) 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후 희망하는 실습기관으로 온라인 실습지원
- 3) 실습 지원결과 선발여부 확인 후 선발되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
- 4) 지원 후 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(선발여부에서 탈락이 확정된 경우)에는 지원기간 내 타 실습가능기관으로 지원 가능
- 5)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→ 실습지도교수 승인 →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
- 6) 실습가능한 기관이 조회되지 않을 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올인케어 역량개발프로그램 확인 후 이력서, 자기소개서/ 지원서 작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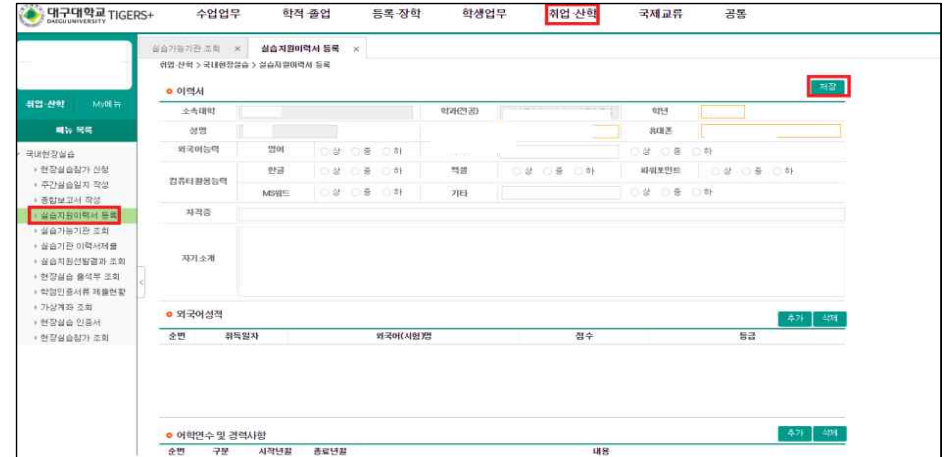
①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'조회'버튼 클릭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

<실습가능기관 계획서 '보기' 클릭 시 아래내용(실습정보) 확인>



② 실습가능기관 조회 후 실습지원을 위한 이력서 등록

\* 이력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실습기관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음



③ 이력서 등록 후 '실습지원' 메뉴에서 실습지원 클릭

- 실습기관 '찾기' 클릭 후 실습기관 선택



- 실습지원 후 선발 대기 상태 : 이력서 '접수'로 표기됨
- 실습지원 후 해당 실습기관에서 선발을 확정하면 아래와 같이 이력서 '선발'을 확인 및 실습지도교수와 상담 후 '신청서'를 클릭하여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지만 정상 신청됨을 유의바람.
- \* 유의사항
  - 실습지원 상태 '접수' 및 '선발'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중복지원 불가
  - 실습지원 상태 '탈락' 및 '신청취소'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지원가능(단,신청취소는 실습지원상태가 "접수"일 경우만 가능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별도로 요청 하여야 함.)
- 선발 확정 후 '현장실습 참가신청서'를 작성하여 '신청' 버튼 클릭

**공통사항    학과(교수) 연계형 /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**

가.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지도교수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

①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'현장실습신청서관리' 메뉴에서 신청상태 확인 가능

- 학생이 신청서 작성 시 : 상태가 '접수'로 표시됨



- 실습지도교수님이 '승인'처리 시 : 상태가 '대기'로 표시됨



-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최종 실습 '확인' 처리 시 : 상태가 '통과'로 표시됨



※ 상태가 '통과'로 확인되면 신청에 관한 모든 과정이 종료됨

나. 실습일지(주간실습일지, 종합보고서)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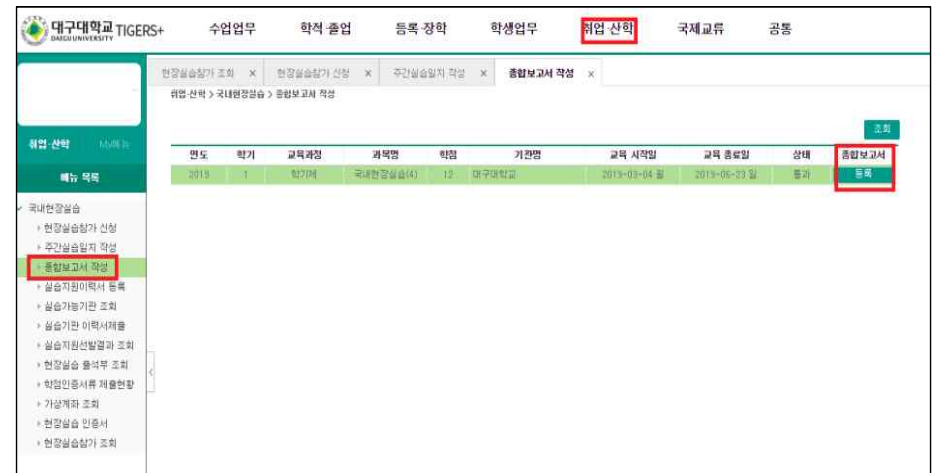
① 실습시작 후 '주간실습일지' 작성

-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
- 실습이 종료되는 마지막날까지 입력 완료하여야 학점 지급 가능함.
-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.



② 실습 종료 후 '종합보고서' 작성

-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
-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.  
(단, 실습 기관 소개 및 건의 사항 글자 제한 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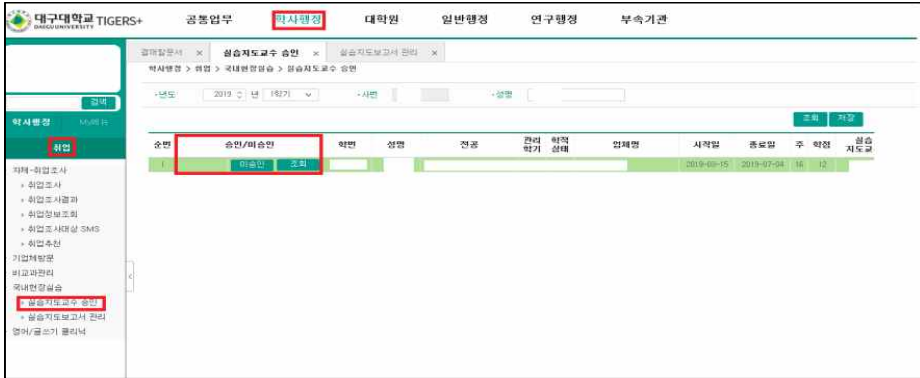
### 3 실습지도교수

#### 1. 현장실습 참가신청학생의 실습지도교수 승인

학생이 현장실습 참가신청 시 실습지도교수 승인을 신청하면 지도교수가 교원시스템에서 승인/미승인 처리

\* TIGERS+(교원) → 학사행정 → 취업(or 역량) → 국내현장실습 → 실습지도교수 승인

\* 조회 클릭하시면 학생 정보 조회 가능



\* 해당 학생 행을 클릭하면 실습참가신청서 내용 조회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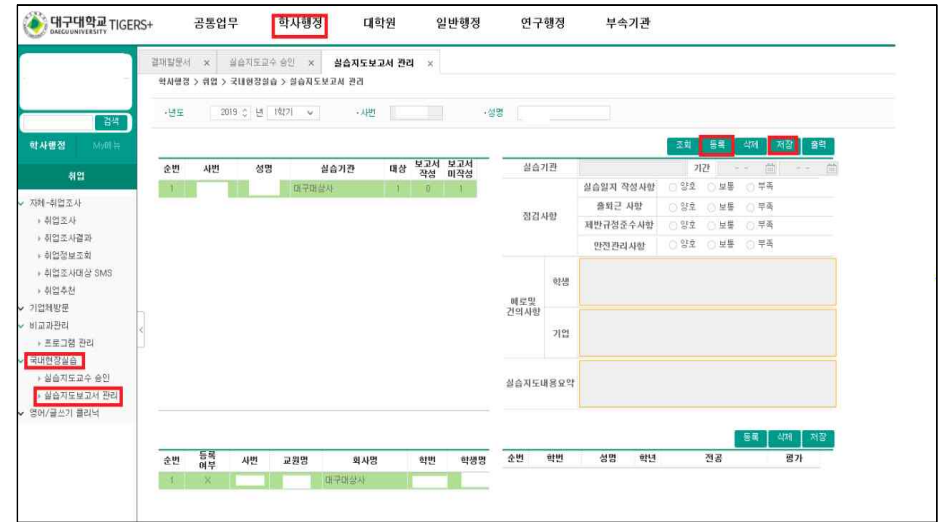
#### 2. 현장실습지도

가. 현장실습 기관을 방문, 유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실습상황 점검

나.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, 출근 상황, 실습일지 작성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의 실습상황을 평가하여 교원시스템의 '실습지도보고서' 작성(실습지도교수 참여 실적은 교원 봉사업적에 반영)

다. 현장실습지도를 위한 실습기관 방문 시 교직원 기업체방문을 신청할 수 있음

- 1) 메뉴 : TIGERS WEB+(교원시스템) 접속 - 학사 - 취업(or 역량) - 국내현장실습 - 실습지도보고서
- 2) 지도기간 : 학생 개인별 현장실습 기간
- 3) 우측의 '실습지도보고서' 및 '학생정보'의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내용입력 및 학생평가 후 각각 저장



[별첨1]

## 현장실습기간 조건표

▶ 학점인정학기: 2023학년도 1학기

학기제 현장실습 (16주 / 640시간)		학기제 현장실습 (20주 / 800시간)	
시작일자	종료일자	시작일자	종료일자
2023-03-02(목)	2023-06-21(수)	2023-03-02(목)	2023-07-19(수)
2023-03-03(금)	2023-06-22(목)	2023-03-03(금)	2023-07-20(목)
2023-03-06(월)	2023-06-25(일)	2023-03-06(월)	2023-07-23(일)
2023-03-07(화)	2023-06-26(월)	2023-03-07(화)	2023-07-24(월)
2023-03-08(수)	2023-06-27(화)	2023-03-08(수)	2023-07-25(화)
2023-03-09(목)	2023-06-28(수)	2023-03-09(목)	2023-07-26(수)
2023-03-10(금)	2023-06-29(목)	2023-03-10(금)	2023-07-27(목)
2023-03-13(월)	2023-07-02(일)	2023-03-13(월)	2023-07-30(일)
2023-03-14(화)	2023-07-03(월)	2023-03-14(화)	2023-07-31(월)
2023-03-15(수)	2023-07-04(화)	2023-03-15(수)	2023-08-01(화)
2023-03-16(목)	2023-07-05(수)	2023-03-16(목)	2023-08-02(수)
2023-03-17(금)	2023-07-06(목)	2023-03-17(금)	2023-08-03(목)
2023-03-20(월)	2023-07-09(일)	2023-03-20(월)	2023-08-06(일)
2023-03-21(화)	2023-07-10(월)	2023-03-21(화)	2023-08-07(월)
2023-03-22(수)	2023-07-11(화)	2023-03-22(수)	2023-08-08(화)
2023-03-23(목)	2023-07-12(수)	2023-03-23(목)	2023-08-09(수)
2023-03-24(금)	2023-07-13(목)	2023-03-24(금)	2023-08-10(목)
2023-03-27(월)	2023-07-16(일)	2023-03-27(월)	2023-08-13(일)
2023-03-28(화)	2023-07-17(월)	2023-03-28(화)	2023-08-14(월)
2023-03-29(수)	2023-07-18(화)	2023-03-29(수)	2023-08-15(화)
2023-03-30(목)	2023-07-19(수)	2023-03-30(목)	2023-08-16(수)
2023-03-31(금)	2023-07-20(목)	2023-03-31(금)	2023-08-17(목)

※ 유의사항

- 학기제 국내현장실습기간의 경우 위 조건표상 기재된 기준일로 설정 가능함.  
 단,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16주 20주 모두 신청 가능하나 20주로 신청할 경우  
 ※ 2023. 03. 02(목) ~ 2023. 07. 19(수) 로만 진행 가능합니다.
- 주말 및 법적공휴일은 실습 시작 일자로 설정할 수 없음.

(별지 제2호 서식)

■ 붙임1

##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

기관(법인)명				영문기관명	
대표자명				사업자등록번호	
개업년월일			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	
종업원 수				매출액	
사업장소재지					
기관현황	구분	상장여부		사업의 종류(업태)	사업의 종류(종목)
	대기업	[ ]	코스피	[ ]	
	중견기업	[ ]	코스닥	[ ]	
	중소기업	[ ]	비상장	[ ]	
	공공기관 협회/기타	[ ]			
기관 근로형태	정규 근로시간	1일 기준: [ ] 시간    1주 기준: [ ] 시간			
	정규 근로일수	주 : [ ] 일 / 근로요일 : [ 직접기입 ]    *월-금 등 요일 기입			
★ 관리부서	부서명			성명	직위
	연락처			휴대폰	
	이메일				
전행방법	서류선발 / 면접선발 /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				
전행절차 및 일정	접수 마감일자	면접일자	최종선발일자	*참고일정	
	00월00일00시 [ ]	00월00일00시 [ ]	00월00일00시 [ ]		
운영계획	붙임 1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				
기타사항	Co-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(필요시 기입)				
<b>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기준 및 절차</b>					
[운영기준] 법제처 -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교육부 고시) 참조					
[운영절차] (학교)Co-op 참여 의뢰(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) ▶ [현재단계](기관)Co-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(송부) ▶ (학교/기관)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▶ (학교)Co-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 ▶ (학교)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 ▶ (기관)학생선발 ▶ (학교)사전교육/수강신청 실시 ▶ (학교/기관/학생)3자 협약체결 ▶ (기관/학교)산재/상해보험 가입 ▶ (기관)운영계획에 따른 실시/출석관리 및 평가실시 ▶ (학생)보고서작성 ▶ (학교)성적 평정					
붙임 서류	1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2. 사업자 등록증 ▶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. 기관소개 자료 ▶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				

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,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[실습기관명 기입] (날인/서명)

대구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(날인/서명)



[별지 제2호 서식]

■ **붙임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**

운영과정	▪방학과정 [ ] ▪학기과정 [ ] ▪방학/학기 연계과정 [ ]
운영유형	▪직무체험형 [ ] ▪채용연계형 [ ]
실습기간	20년 월 일 ~ 20년 월 일
정규실습 시간	오전 시 분 ~ 오후 시 분 (▶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)
실습요일	월 [ ] 화 [ ] 수 [ ] 목 [ ] 금 [ ] 토 [ ] 일 [ ]
연장실습 여부	▪연장실습 없음 [ ] ▪상황별실시 [ ] ▪주기적/상시적실시 [ ]
산재보험 가입	▪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(법적 의무가입 / 미가입시 운영 불가)
기타사항	▪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[ ] / N [ ] *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

실습지원비	정규실습시간	▪지급기준:[월/주 기준 중 선택]▶ [ ] 기준 / [ ]원
	연장실습시간	▪지급기준:[시간 기준] / [ ]원 (*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)
	지급예정일	당월 [ ] 일 (*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)
기타 지원 사항	식사 [ ] 교통 [ ] 기숙사 [ ] ◀현물지원 사항	

현장교육 담당자	부서명		성명		직위	
	연락처		휴대폰			
	이메일					

실습 직무	부서명	
	주소	'실습기관 기본 정보' 상의 주소(위치)와 다른 경우 작성
	직무명	
	교육 목표	*Co-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*
	직무개요	*무엇을, 왜(목적, 이유), 어떻게(방법) 어디까지(범위)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*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*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, 단순·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*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*검토하여야 함
운영 / 지도 계획	*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/지도계획 기술 * * * * * * *	

학생 요건	전공 (인원)	OO학과 1명, OOO학과 1명 또는 OOO학과/OOO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
	요구 역량	Co-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, 외국어 역량, 지식/기술역량,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

[붙임3]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(학기제 전공선택 신청 학생용)

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

소 속	대학	학과(전공)	학년(학기)	
성 명		학 번		
실습기관		실습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16주( ) 20주( )	
학점인정학기	학년도	학기	인정과목	국내현장실습(일반선택) 3학점 전공현장실습(전공선택) ( )학점

실습내용	인정사유(의견)

위와 같이 국내현장실습에 대한 전공학점인정 심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학부(과) 전공주임교수 : (인)

소속교수(\*실습지도교수 날인 필수)

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.(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)

인	인	인	인	인
인	인	인	인	인
인	인	인	인	인
인	인	인	인	인

※ 소속교원(정년트랙 전임교원) 2/3 이상이 날인하여 제출하여야만 학점 인정

※ 현장실습내용 증빙서류(기관운영계획서) 필수 첨부

※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됨.

(복수전공,부전공 인정불가)

대구대학교 총장 귀하